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문화미디어산업실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등 미술품 유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점자교원 양성, 점자 능력 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계운영서기보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정원 1명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7항 중 “ 문화산업정책과·문화산업기반과”를 “문화산업정책과·문화기술과·문화산업기반과”로, “ 문화수출통상과장”을 “문화기술과장·문화수출통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5.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제46조제2항 중 “49명”을 “46명”으로, “5급 21명”을 “5급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을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문화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749”를 “754”로, 일반직 계 “742”를 “747”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5”를 “1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4”를 “43”으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91”을 “194”로,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4”를 “195”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7”을 “9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757”를 “762”로 하고, 일반직 계 “750”를 “755”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5”를 “1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4”를 “43”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09”을 “212”로,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88”을 “189”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3”을 “9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9”를 “581”로, 일반직 계 “578”을 “580”으로, 학예연구관 “54”를 “55”로, 학예연구사 “153”을 “15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79”를 “581”로, 일반직 계 “578”을 “580”으로, 학예연구관 “58”을 “59”로, 학예연구사 “149”를 “15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를 각각 “53”으로, 학예연구사 “16”을 “17”로 한다.

별표 5 방호서기보 8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 기계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5의2 방호서기보 8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 기계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5”를 각각 “9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90”을 “91”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7”을 각각 “15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46”을 “147”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4]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9조 관련)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권리보호과	3명 (4급 1명, 5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관광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다.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기술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처	-	2028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 ⑥ (생 략) ⑦ 문화미디어산업실에 <u>문화산 업정책과 · 문화산업기반과 · 문 화수출통상과 · 미디어산업정책 과 ·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게 임콘텐츠산업과 · 출판인쇄독서 진흥과 · 대중문화산업과 · 저작 권정책과 · 저작권산업과 · 저작 권보호과 · 국제문화정책과 · 한 류지원협력과 및 국제문화사업 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 · 게임 콘텐츠산업과장 · 저작권산업과 장 ·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 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으로, 문화산업기반과장 · 미 디어산업정책과장 · 출판인쇄독 서진흥과장 · 대중문화산업과장 · 저작권정책과장 · 국제문화정 책과장 ·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 <u>화수출통상과장은</u> 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u>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문화산 업정책과 · 문화기술과 · 문화산 업기반과</u> ----- ----- ----- ----- ----- -----, ----- ----- ----- ----- ----- ----- -----, <u>문화기술과장 · 문화수출통상과장은</u> -----

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
·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 운영

9.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2.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
· 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3.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 -----

--.

⑧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8.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

⑨ ~ ⑳ (생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9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1명, 6급 18명, 7급 4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

·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 운영

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5.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

· 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㉑ ~ ㉒ (현행 제9항부터 제21항까지와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4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8명, 6급 18명, 7급 4명)-----
-----.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

④ (생략)	<u>하는 2명(5급 2명), 문화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④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9</u>	<u>754</u>	+5
·	·	·	
·	·	·	
일반직 계	<u>742</u>	<u>747</u>	+5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5</u>	<u>16</u>	+1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	<u>44</u>	<u>43</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 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 록연구관	<u>191</u>	<u>194</u>	+3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 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 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 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 신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	<u>194</u> ·	<u>195</u> ·	+1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97</u> ·	<u>98</u> ·	+1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7</u>	<u>762</u>	+5
·	·	·	
·	·	·	
일반직 계	<u>750</u>	<u>755</u>	+5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5</u>	<u>16</u>	+1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	<u>44</u>	<u>43</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 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 록연구관	<u>209</u>	<u>212</u>	+3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			

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 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 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 신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	<u>188</u> .	<u>189</u> .	+1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93</u> .	<u>94</u> .	+1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79</u>	<u>581</u>	+2
•	•	•	
•	•	•	
일반직 계	<u>578</u>	<u>580</u>	+2
•	•	•	
•	•	•	
학예연구관	<u>54</u>	<u>55</u>	+1
•	•	•	
•	•	•	
학예연구사	<u>153</u>	<u>154</u>	+1
•	•	•	
•	•	•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79</u>	<u>581</u>	+2
•	•	•	
•	•	•	
일반직 계	<u>578</u>	<u>580</u>	+2
•	•	•	
•	•	•	
학예연구관	<u>58</u>	<u>59</u>	+1
•	•	•	
•	•	•	
학예연구사	<u>149</u>	<u>150</u>	+1
•	•	•	
•	•	•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u>	<u>53</u>	+1
일반직 계	<u>52</u>	<u>53</u>	+1
·	·	·	
·	·	·	
학예연구사	<u>16</u>	<u>17</u>	+1
·	·	·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03	303	
일반직 계	303	303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0</u>	<u>1</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u>	<u>0</u>	-1
·	·	·	
·	·	·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03	303	
일반직 계	303	303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0</u>	<u>1</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u>	<u>0</u>	-1
·	·	·	
·	·	·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5</u>	<u>96</u>	+1
일반직 계	<u>95</u>	<u>96</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0</u>	<u>91</u>	+1
·	·	·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7</u>	<u>158</u>	+1
일반직 계	<u>157</u>	<u>158</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6</u>	<u>147</u>	+1
·	·	·	
·	·	·	